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년월일: 2000.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병원명칭에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는 환자와 그 가족이 수치감을 느낄 우려가 있고, 병원명이 너무 길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 의료보험법이 폐지(2000.7.1)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비급여 대상 의료수가는 의료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제5조제1항)
 -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중 “치매요양병원”을 각각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의료수가 적용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를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를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7호 · 제8조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치매요양 병원</u>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p> <p>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② 노인전문 병원</p> <p>③ (현행과 같음)</p> <p>④</p> <p>..... 노인전문병원</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료수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u>의료수가 적용은 의료 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u>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u>의료보험 비급여 항목</u>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p>	<p>제5조(의료수가) ① <u>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u></p> <p>② <u>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6조(관리) 도지사는 <u>치매요양병원</u>의 적정한 운영 및 입원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 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수탁자가 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게 한다.</p> <p>1. 내지 6. (생략) 7. 기타 <u>치매요양병원</u>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p>	<p>제6조(관리) 노인전문 병원</p> <p>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노인전문병원</p>

관 계 법령 발췌

〈의료법〉

제37조(醫療報酬) 醫療機關이 患者 등으로 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관하여는 綜合病院·病院·齒科醫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產員은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의료보호법〉

제8조(보호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범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1999.2>

IX. 행정사항

1. 시·도지사

- 5)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병원명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